2010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118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18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1. 20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12. 4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

○ 고성군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
○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
○ 장학금 지급은 년2회 (상·하반기 각 1회)

○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은 13명 5,200,000원

4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○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및기금의설치)

○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계획안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

○ 2010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예치금 회수 116,335천원, 이자수입 15천원 등 총 116,350천원을 기금수입으로 하여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있어 13명에게 5,200천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111,150천원은 재예치 계획으로 운용계획안을 수립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

○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성군금고의 정기예금 금리(농협 기준금리 기준 2008. 10. 31현재 3.4%, 2009. 10. 31현재 2.3%)를 비교해 볼 때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금의 안정적인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, 그리고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4개년간 각 5,2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4개년간 같은 금액으로만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, 지원대상에 있어 "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" 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문 :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의 선발기준은, 그리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?

◉ 답 : 일반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자녀가 대상이고, 특별장학생은 예술분야 특기자, 소년소녀가정으로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.

○ 문 : 장학기금의 조성액도 1억원에 불과하고 지급도 1인당 30~40만원의 수준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기금을 확대 조성할 용의는, 지급대상도 우수한 학생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학업성적은 좀 낮아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
◉ 답 : 기금의 확대 조성은 현재는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의 정책이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과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음.

○ 문 : 장학기금의 지급 목적인 자활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수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.

◉ 답 : 장학기금의 지급 목적인 자활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수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09. 12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